|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2)> 인쇄발부 통지**  법발[2020]1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고급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장위구르자치구(新彊維吾爾自治區)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分院) :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2)>를 인쇄발부하오니 철저히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최고인민법원  2020년 5월 15일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2)**  당중앙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관철•실행하며 ‘6대 안정화(六穩)’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6대 보장(六保)’ 임무를 실행하며 각급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코로나19 관련 계약•금융•파산 등 민사사건을 적절할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도의견을 제시한다.   1. **계약 사건의 심리** 2.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당사자가 약정된 기한내에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이행원가가 증가하였고 계속 이행 시 계약목적의 달성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도인이 약정된 기한내에 오더를 완성할 수 없거나 화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고 가령 계속 이행한다 할지라도 매수인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와 기지급 선불금 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 매매계약의 계속 이행은 가능하나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인건비•원자재•물류 등 계약이행원가의 현저한 상승 또는 제품가격의 대폭 하락이 초래되어 계약을 계속 이행 시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상태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대금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도인이 약정된 기한내에 화물을 인도할 수 없거나 매수인이 약정된 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가 이행기한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행기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대금 조정, 이행기한 변경 등 방식으로 계약의 변경이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 매도인이 매수인과 방역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방역물품을 고가로 타인에게 전매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이 취득한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방역물품을 전용(轉用)하거나 임시로 징용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2.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도인이 분양주택매매계약에 약정된 기한내에 주택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매수인이 약정된 기한내에 주택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와 상대방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당사자가 이행기한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3.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영에 사용하는 임차인의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초래되었거나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제와 임차인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전시회•회의•묘회(廟會) 등 특정의 목적으로 일시적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관련 행사가 취소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와 선불금 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1. 국유기업의 부동산 및 정부기관•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등 행정기관•사업기관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영에 사용하는 자로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을 받아 경영난에 봉착한 소형박리기업•자영업자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면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비(非) 국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영에 사용하는 자로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전무 또는 매출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되었고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유도하여 관련 임대료 감면 정책을 참조하여 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한내에 시공을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발주인이 수급인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시공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계약 이행에 초래된 영향의 크기를 참작하여 적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인건비•건축자재 등 원가가 대폭 상승하였거나 수급인에게 인건비•설비임차료 등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을 계속 이행 시 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상탱에서 수급인이 대금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사건의 실제사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오프라인교육계약이 체결된 후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으나 온라인 교육, 수강기간 변경 등 방식으로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상태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온라인 교육, 수강기간 변경, 수강료 조정 등 방식을 통한 계약의 계속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고 온라인 교육의 방식을 통해서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건의 실제상황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시기성 요구가 있는 교육계약으로 수강기간의 변경을 통해서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교육을 수강하는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교육계약이 해제된 후 선납 수강료는 이미 수강한 수업시간 등 상황에 근거하여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여야 한다.   1.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유료게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에서 ‘다샹(打賞)’하는 등 방식으로 그의 연령•지력과 어울리지 않는 금액을 지출함으로써 보호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금액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2. **금융 사건의 심리** 3.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업종, 성장전망은 양호하나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 특히 중형•소형•미형 기업과 연관된 금융대출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중국인민은행 등 5부서가 발표한 <금융지원 진일보 강화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관한 통지> 등 일련의 금융지원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소송에서 금융기관이 금융지원 정책에 반하여 대출 만기일 조기 도래,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이 수취한 금리와 자문료•담보비 등 기타 비용의 명목으로 수취한 변형적 금리는 국가의 재대출•재할인 등 대출금리 특별혜택 정책의 규정에 엄격히 의거하여 초과 부분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된 자, 코로나19 방역 수요에 따라 격리관찰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방역 업무인원,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자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개인 대출금 상환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상환기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방역물품 생산•경영기업이 자사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등 동산 위에 부동담보(浮動抵押)를 설정한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의 실현을 신청하였고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담보물권의 실현이 기업의 방역물품 생산•경영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요인이 해소된 후 다시 처리할 수 있다. 5.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증권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주식 질권 설정 및 신용거래 분쟁은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권사를 채권자로 하는 장내주식 질권 설정 및 신용거래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관련 정책을 참조하여 증권사가 정책에 따라 각 고객집단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협상을 통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증권사가 규정에 반하여 포지션을 강제 청산함으로써 확대된 부분의 손실에 대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고객의 소송청구를 법에 의거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기타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장외주식 질권 설정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주식 질권의 실현이 상장회사의 정상 경영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정책 유도와 각 당사자의 이익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상장회사의 허위진술로 인한 권리침해 민사손해배상 사건에서 투자자의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허위진술로 인한 증권시장 민사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요인과 허위진술 요인으로 인한 주가하락 손실을 구분하고 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7. 도소매업•숙박업•요식업•물류운송업•문화관광업 등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회사 또는 그 주주•실제통제인과 투자자 사이에 ‘가치평가조정협의(業績對賭協議)’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목표회사의 실적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쌍방이 협상을 통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에 실패하였고 약정된 실적기준 또는 실적보상액수에 따라 계약을 계속 이행 시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한 손실을 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가치평가조정협의(業績對賭協議)’에 회사의 소액주주가 지배주주 또는 실제통제인과 연대하여 실적보상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두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자가 소액주주와 회사, 지배주주 또는 실제통제인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소송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1.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된 의료보험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보험자가 해당 질병이 상업의료보험계약상의 중대질병 또는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음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피보험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보험계약에 약정된 의료서비스기관이 아닌 기타 의료서비스기관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약정비용에 대해 피보험자•수익자가 보험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보험인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약정된 의료서비스기관이 아닌 기타 의료서비스기관에서 기타 질병을 치료받음으로써 발생한 약정비용이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 객관적 사유로 인해 초래된 것임이 확실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수익자가 코로나19 방역기간에 보험사로부터 증정받은 의료보험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2. 금융리스회사와 의료서비스기관 사이에 이뤄진 의료설비금융리스 업무로 인해 발생한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료서비스기관이 금융리스회사가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행정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융리스계약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3. **파산 사건의 심리** 4. 기업이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만기도래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상을 통해 할부, 채무변제기간 연장, 계약대금 변경 등 방식으로 파산신청 사유를 해소하도로 적극 유도하거나 채무자가 법정외 화해, 법정외 구조조정, 예비 구조조정 등 방식으로 채무위기를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한 신속하게 기업을 구제하여야 한다. 5. 인민법원은 기업의 파산접수요건 부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기업이 곤경에 빠진 이유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경영상황이 양호했던 기업으로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경영,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만기도래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된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 능력, 영위업종의 성장전망 등 요인과 결부시켜 기업의 채무변제능력을 전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기업의 특정 시기 자금흐름과 자산•부채 상황에 근거하여 생존 능력을 구비한 기업의 파산 절차 개시하는 재정(裁定)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이미 곤경에 빠진 기업으로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생산•경영이 진일보 악화되어 파산 사유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파산신청을 접수함으로써 시장의 우승열패와 자원 재배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6. 집행절차와 파산절차의 연결을 진일보 추진하여야 한다. 파산절차에서 피집행인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파산 사유를 구비하긴 하였으나 구제하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설명 등 방식을 통해 채권자 또는 피집행인이 사건을 파산심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기업파산법상 집행 정지, 보전조치 해제, 금리계산 및 지불 정지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운영 가치를 보전하고 기업의 재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회사정리절차 및 화해절차를 적용하여 기업의 채무위기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하도록 적극 유도으로써 곤경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구제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이송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개시된 사법경매절차는 이송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경매가 성사된 경우 경매목적물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경매를 통해 취득한 현금은 파산절차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집행절차에서 자산평가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되었고 평가결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회계감사결론이 파산 사건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경우 파산절차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회사정리절차에서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투자자 모집, 실사 실시, 협상 추진 등이 불가능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회사정리 업무에 실제로 미친 영향의 크기에 근거하여 기업파산법 제79조에 규정된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해합의서가 이미 집행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집행이 어렵게 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충분한 협상을 거쳐 변경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협상을 거쳐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해합의서를 변경하는 경우 <전국법원파산심판업무회의기록>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집행기한의 변경과 연관된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으로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으며 연장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초래되는 불리한 영향을 감소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건의 채권신고기한에 영향이 초래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법정(法定)의 최장 기한을 채택할 수 있다. 채권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소정의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할 수 없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내에 보충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충신고자는 보충신고채권 심사 및 확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청문회•채권자회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연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15일 전에 채권자 등 관련 주체에게 통보하고 해석 및 설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지속경영 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보호하여야 하며 공익적 채권금융의 제도 기능을 충분히 살려 경영 지속을 위한 자금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자로서 기업이 경영을 지속할 능력을 갖추었거나 방역물품 생산 여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26조,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적당한 경영관리 모델을 선택하고 법원의 조율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능력을 발굴하고 방출하여야 한다.   재산처분의 가치 최대화 원칙을 고수한다. 관리인이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자산처분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고 처분시기와 처분방식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부당한 자산가치 저평가로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최고인민법원의 법에 의거하여 파산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의견>의 요구에 따라 파산공고 통지, 채권신고, 채권자회의 소집, 채무자 재산 조회 및 처분, 투자자 유치 등 방면에서 정보화 수단을 심도있게 응용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및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채권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 파산절차의 원가를 진일보 절감시키며 파산절차의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  | **最高人民法院**  **印发《关于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民事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二）》的通知**  法发〔2020〕17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现将《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民事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二）》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最高人民法院 2020年5月15日  **最高人民法院**  **关于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民事案件**  **若干问题的指导意见（二）**  为进一步贯彻落实党中央关于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部署，扎实做好“六稳”工作，落实“六保”任务，指导各级人民法院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合同、金融、破产等民事案件，提出如下指导意见。    一、关于合同案件的审理  1.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当事人不能按照约定的期限履行买卖合同或者履行成本增加，继续履行不影响合同目的实现，当事人请求解除合同的，人民法院不予支持。  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出卖人不能按照约定的期限完成订单或者交付货物，继续履行不能实现买受人的合同目的，买受人请求解除合同，返还已经支付的预付款或者定金的，人民法院应予支持；买受人请求出卖人承担违约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2.买卖合同能够继续履行，但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人工、原材料、物流等履约成本显著增加，或者导致产品大幅降价，继续履行合同对一方当事人明显不公平，受不利影响的当事人请求调整价款的，人民法院应当结合案件的实际情况，根据公平原则调整价款。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出卖人不能按照约定的期限交货，或者导致买受人不能按照约定的期限付款，当事人请求变更履行期限的，人民法院应当结合案件的实际情况，根据公平原则变更履行期限。  已经通过调整价款、变更履行期限等方式变更合同，当事人请求对方承担违约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3.出卖人与买受人订立防疫物资买卖合同后，将防疫物资高价转卖他人致使合同不能履行，买受人请求将出卖人所得利润作为损失赔偿数额的，人民法院应予支持。因政府依法调用或者临时征用防疫物资，致使出卖人不能履行买卖合同，买受人请求出卖人承担违约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4.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出卖人不能按照商品房买卖合同约定的期限交付房屋，或者导致买受人不能按照约定的期限支付购房款，当事人请求解除合同，由对方当事人承担违约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是，当事人请求变更履行期限的，人民法院应当结合案件的实际情况，根据公平原则进行变更。  5.承租房屋用于经营，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承租人资金周转困难或者营业收入明显减少，出租人以承租人没有按照约定的期限支付租金为由请求解除租赁合同，由承租人承担违约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为展览、会议、庙会等特定目的而预订的临时场地租赁合同，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该活动取消，承租人请求解除租赁合同，返还预付款或者定金的，人民法院应予支持。  6.承租国有企业房屋以及政府部门、高校、研究院所等行政事业单位房屋用于经营，受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出现经营困难的服务业小微企业、个体工商户等承租人，请求出租人按照国家有关政策免除一定期限内的租金的，人民法院应予支持。  承租非国有房屋用于经营，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承租人没有营业收入或者营业收入明显减少，继续按照原租赁合同支付租金对其明显不公平，承租人请求减免租金、延长租期或者延期支付租金的，人民法院可以引导当事人参照有关租金减免的政策进行调解；调解不成的，应当结合案件的实际情况，根据公平原则变更合同。  7.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承包方未能按照约定的工期完成施工，发包方请求承包方承担违约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承包方请求延长工期的，人民法院应当视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对合同履行的影响程度酌情予以支持。  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人工、建材等成本大幅上涨，或者使承包方遭受人工费、设备租赁费等损失，继续履行合同对承包方明显不公平，承包方请求调整价款的，人民法院应当结合案件的实际情况，根据公平原则进行调整。  8.当事人订立的线下培训合同，受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不能进行线下培训，能够通过线上培训、变更培训期限等方式实现合同目的，接受培训方请求解除的，人民法院不予支持；当事人请求通过线上培训、变更培训期限、调整培训费用等方式继续履行合同的，人民法院应当结合案件的实际情况，根据公平原则变更合同。  受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不能进行线下培训，通过线上培训方式不能实现合同目的，或者案件实际情况表明不宜进行线上培训，接受培训方请求解除合同的，人民法院应予支持。具有时限性要求的培训合同，变更培训期限不能实现合同目的，接受培训方请求解除合同的，人民法院应予支持。培训合同解除后，已经预交的培训费，应当根据接受培训的课时等情况全部或者部分予以返还。  9.限制民事行为能力人未经其监护人同意，参与网络付费游戏或者网络直播平台“打赏”等方式支出与其年龄、智力不相适应的款项，监护人请求网络服务提供者返还该款项的，人民法院应予支持。  二、关于金融案件的审理  10.对于受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较大的行业，以及具有发展前景但受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暂遇困难的企业特别是中小微企业所涉金融借款纠纷，人民法院在审理中要充分考虑中国人民银行等五部门发布的《关于进一步强化金融支持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的通知》等系列金融支持政策：对金融机构违反金融支持政策提出的借款提前到期、单方解除合同等诉讼主张，人民法院不予支持；对金融机构收取的利息以及以咨询费、担保费等其他费用为名收取的变相利息，要严格依据国家再贷款再贴现等专项信贷优惠利率政策的规定，对超出部分不予支持；对因感染新冠肺炎住院治疗或者隔离人员、疫情防控需要隔离观察人员、参加疫情防控工作人员以及受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暂时失去收入来源的人员所涉住房按揭、信用卡等个人还贷纠纷，人民法院应当结合案件的实际情况，根据公平原则变更还款期限。  11.防疫物资生产经营企业以其生产设备、原材料、半成品、产品等动产设定浮动抵押，抵押权人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九十六条的规定申请实现担保物权的，人民法院受理申请后，被申请人或者利害关系人能够证明实现抵押权将危及企业防疫物资生产经营的，可待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因素消除后再行处理。  12.对于因疫情防控期间证券市场价格波动引发的股票质押和融资融券纠纷，应当区分不同情形处理：对于债权人为证券公司的场内股票质押和融资融券纠纷，人民法院可以参照中国证监会发布的有关政策，引导证券公司按照政策与不同客户群体协商解决纠纷；协商不成的，对于客户要求证券公司就违规强行平仓导致损失扩大部分承担赔偿责任的诉讼请求，依法予以支持。对于债权人为其他金融机构的场外股票质押纠纷，人民法院应当充分考虑股票质权实现对上市公司正常经营的影响，加强政策引导和各方利益协调，努力降低对证券市场的影响。  13.人民法院审理因上市公司虚假陈述侵权民事赔偿案件，在认定投资者损失数额时，应当根据《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证券市场因虚假陈述引发的民事赔偿案件的若干规定》第十九条第四项的规定，区分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因素和虚假陈述因素所导致的股价下跌损失，依法公平、合理确定损失赔偿范围。  14.对于批发零售、住宿餐饮、物流运输、文化旅游等受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严重的公司或者其股东、实际控制人与投资方因履行“业绩对赌协议”引发的纠纷，人民法院应当充分考虑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对目标公司业绩影响的实际情况，引导双方当事人协商变更或者解除合同。当事人协商不成，按约定的业绩标准或者业绩补偿数额继续履行对一方当事人明显不公平的，人民法院应当结合案件的实际情况，根据公平原则变更或者解除合同；解除合同的，应当依法合理分配因合同解除造成的损失。  “业绩对赌协议”未明确约定公司中小股东与控股股东或者实际控制人就业绩补偿承担连带责任的，对投资方要求中小股东与公司、控制股东或实际控制人共同向其承担连带责任的诉讼请求，人民法院不予支持。  15.在审理与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相关的医疗保险合同纠纷案件时，对于保险人提出的该疾病不属于商业医疗保险合同约定的重大疾病范围或者保险事故的抗辩，人民法院不予支持。感染新冠肺炎的被保险人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未在保险合同约定的医疗服务机构接受治疗发生的约定费用，被保险人、受益人依据保险合同的约定向保险人请求赔付的，人民法院应予支持。被保险人因其他疾病在非保险合同约定的医疗服务机构接受治疗发生的约定费用，确系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等客观原因造成，被保险人、受益人请求赔付的，人民法院应予支持。被保险人、受益人根据疫情防控期间保险公司赠与的医疗保险合同的约定请求赔付的，人民法院应予支持。  16.在审理融资租赁公司与医疗服务机构之间开展的医疗设备融资租赁业务所引发的民事纠纷案件时，对于医疗服务机构以融资租赁公司未取得医疗器械销售行政许可为由主张融资租赁合同无效的抗辩，人民法院不予支持。  三、关于破产案件的审理  17.企业受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不能清偿到期债务，债权人提出破产申请的，人民法院应当积极引导债务人与债权人进行协商，通过采取分期付款、延长债务履行期限、变更合同价款等方式消除破产申请原因，或者引导债务人通过庭外调解、庭外重组、预重整等方式化解债务危机，实现对企业尽早挽救。  18.人民法院在审查企业是否符合破产受理条件时，要注意审查企业陷入困境是否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所致而进行区别对待。对于疫情爆发前经营状况良好，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而导致经营、资金周转困难无法清偿到期债务的企业，要结合企业持续经营能力、所在行业的发展前景等因素全面判定企业清偿能力，防止简单依据特定时期的企业资金流和资产负债情况，裁定原本具备生存能力的企业进入破产程序。对于疫情爆发前已经陷入困境，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导致生产经营进一步恶化，确已具备破产原因的企业，应当依法及时受理破产申请，实现市场优胜劣汰和资源重新配置。  19.要进一步推进执行与破产程序的衔接。在执行程序中发现被执行人因疫情影响具备破产原因但具有挽救价值的，应当通过释明等方式引导债权人或者被执行人将案件转入破产审查，合理运用企业破产法规定的执行中止、保全解除、停息止付等制度，有效保全企业营运价值，为企业再生赢得空间。同时积极引导企业适用破产重整、和解程序，全面解决企业债务危机，公平有序清偿全体债权人，实现对困境企业的保护和拯救。  执行法院作出移送决定前已经启动的司法拍卖程序，在移送决定作出后可以继续进行。拍卖成交的，拍卖标的不再纳入破产程序中债务人财产范围，但是拍卖所得价款应当按照破产程序依法进行分配。执行程序中已经作出资产评估报告或者审计报告，且评估结论在有效期内或者审计结论满足破产案件需要的，可以在破产程序中继续使用。  20.在破产重整程序中，对于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而无法招募投资人、开展尽职调查以及协商谈判等原因不能按期提出重整计划草案的，人民法院可以依债务人或者管理人的申请，根据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对重整工作的实际影响程度，合理确定不应当计入企业破产法第七十九条规定期限的期间，但一般不得超过六个月。  对于重整计划或者和解协议已经进入执行阶段，但债务人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而难以执行的，人民法院要积极引导当事人充分协商予以变更。协商变更重整计划或者和解协议的，按照《全国法院破产审判工作会议纪要》第19条、第20条的规定进行表决并提交法院批准。但是，仅涉及执行期限变更的，人民法院可以依债务人或债权人的申请直接作出裁定，延长的期限一般不得超过六个月。  21.要切实保障债权人的实体权利和程序权利，减少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对债权人权利行使造成的不利影响。受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案件的债权申报期限，可以根据具体情况采取法定最长期限。债权人确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无法按时申报债权或者提供有关证据资料，应当在障碍消除后十日内补充申报，补充申报人可以不承担审查和确认补充申报债权的费用。因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影响，确有必要延期组织听证、召开债权人会议的，应当依法办理有关延期手续，管理人应当提前十五日告知债权人等相关主体，并做好解释说明工作。  22.要最大限度维护债务人的持续经营能力，充分发挥共益债务融资的制度功能，为持续经营提供资金支持。债务人企业具有继续经营的能力或者具备生产经营防疫物资条件的，人民法院应当积极引导和支持管理人或者债务人根据企业破产法第二十六条、第六十一条的规定继续债务人的营业，在保障债权人利益的基础上，选择适当的经营管理模式，充分运用府院协调机制，发掘、释放企业产能。  坚持财产处置的价值最大化原则，积极引导管理人充分评估疫情或者疫情防控措施对资产处置价格的影响，准确把握处置时机和处置方式，避免因资产价值的不当贬损而影响债权人利益。  23.疫情防控期间，要根据《最高人民法院关于推进破产案件依法高效审理的意见》的要求，进一步推进信息化手段在破产公告通知、债权申报、债权人会议召开、债务人财产查询和处置、引进投资人等方面的深度应用，在加大信息公开和信息披露力度、依法保障债权人的知情权和参与权的基础上，助力疫情防控工作，进一步降低破产程序成本，提升破产程序效率。 |